투자업무 운영관리 기준

제 1 조 (목적)

이 기준은 ㈜핑거(이하 "회사"라 함)가 시행하는 타법인 투자사안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투자심의위원회(이하 "투심위"라 함)의 운영과 투자관련 업무의 사전·사후 절차 체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 목적이다.

제 2 조 (투자 심의 대상)

- ① 다음 각 호의 투자 사안은 본 기준에 따른 "투심위"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.
 - 1. 법인별 누적 투자금액 8억원을 초과하는 타법인(자회사 및 관계회사 포함)에 대한 출자 및 메자닌 인수
 - 2. 그 밖에 "투심위"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안
- ② 투자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"회사"의 자금운용을 위한 간접투자 방식의 펀드 등의 투자 (전결 규정 준수)
 - 2.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특수한 사안단,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

제 3 조 ("투심위"의 구성)

- ① "투심위"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대표이사
 - 2. COO
 - 3. CFO
 - 4. 자금운영업무 담당 부서장
 - 5.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높은 "회사" 및 관계사 임원 등 (사안별 위촉, 3명 이내)
- ② 대표이사는 위원장으로 "투심위"를 총괄한다. 위원장인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COO, CFO의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"투심위"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"회사"의 자금 담당자로 한다.

제 4 조 (심의 절차)

투자 심의 시 자금운용 업무 담당 부서장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투자 심의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.

1. 투자 사안 접수

- 2. 위원장의 승인으로 "투심위" 개최 결정
- 3. 서류 검토 및 사전 질문 리스트 제출
- 4. 위원에 투자 관련 자료 및 일정 공유
- 5. 투자 설명회 개최
- 6. 투자 심사보고서 작성
- 7. "투심위" 개최
- 8. 투자 여부 결정 후 집행

제 5 조 (심의 내용)

투자 심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- 1. 투자 사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
- 2. "회사"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
- 3.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
- 4. 연도별 투자계획 및 중장기 성장 로드맵의 적정성
- 5. 투자 대상의 도덕성 및 신뢰성
-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6 조 (소집)

- ① "투심위"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운용업무 담당 부서장이 소집한다.
- ② "투심위"를 소집할 때는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e-Mail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소집 통보 시에는 상정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의결)

- ① "투심위"는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- ② "투심위"는 출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"투심위"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, 원격 화상 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안건을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- ④ 투자사안에 이해 당사자로 해당할 수 있는 자 또는 투자사업의 발굴자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. 이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아닌 배석자로 "투심위" 참석은 가능하다.

제 8 조 (회의록 작성 및 보관)

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.

- 1. 심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, 참석자 명단
- 2. 참석자 및 배석자의 주요 발언 내용

3. 의결내용

제 9 조 (사후 관리)

- ①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변동사항을 확인한다.
 - 1. 재무제표 (분기 결산 시)
 - 2. 등기부등본 (지분, 사채발행, 이사진 등 등기 변동사항 확인)
 - 3. 주주명부 (지분 및 주요주주 변동 시)
 - 4. 사업자등록증 (등록 사항 변동 시)
- ② 투자계약서 상에 명기된 동의 및 협의 사항 관리
- ③ 투자계약 시에 약속한 계약이행 사항 모니터링

제 10 조 (기밀유지)

- ① 사업의 성격상 기밀보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- ② 투자 심의를 위해 "투심위" 등을 진행하는 심의위원 및 관련자는 비밀유지를 엄수하여야 한다.

< 부 칙 >

이 기준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